



##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지침

규정번호	3-3-28
제정일자	2017.02.20
개정일자	2020.03.01
개정번호	Ver.1 총페이지 9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의 학과가 사회맞춤형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정의)** ① “사회맞춤형교육” 이라 함은 산업체의 실제 인력채용 수요조사를 근거로 교육생 선발,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, 채용 약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, 산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협약과정을 말한다.

② “사회맞춤형교육과정” 이라 함은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③ “사회맞춤형학과” 라 함은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기준에 따라 선발한 학생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고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
④ “사회맞춤형교과” 라 함은 학과의 다른 교육과정에는 없고 사회맞춤형교육과정에서만 편성된 과목으로 구성된 분과를 말한다.

**제3조(사회맞춤형학과운영위원회)** ① 사회맞춤형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두고 운영은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을 관련 전임교원과 사회맞춤형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위원 중 1/3 이상은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맞춤형교육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회맞춤형학과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
3.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회맞춤형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4조(사회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)** ① 학과는 사회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(이하 “교육과정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하여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사회맞춤형 협약업체별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과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인재상 및 학생선발기준 등 인재공동선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관한 사항

3.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사회맞춤형교육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5. 사회맞춤형교과 운영에 필요한 실습환경 구축 및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
6.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사회맞춤형학과의 신청)** 사회맞춤형교육 시행을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『사회맞춤형교육 계획 승인 신청서』(별지 서식 1)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회맞춤형학과의 승인)** ① 운영위원회가 학과의 사회맞춤형교육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이 재가함으로 승인을 확정한다.

② 고용계약의 유지가능성을 감안하여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1개 항목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, 참여기업 중 1개라도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회맞춤형학과를 승인하지 아니한다.

1. 협약 산업체가 1개인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산업체, 복수 산업체와 협약하는 경우는 참여기업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산업체
2. 신용등급 B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산업체
3. 정부인증, 지자체 인증 또는 우수기업(월드클래스 300, 명장기업, Best HRD 기업, 강소기업, 혁신기업 등)으로 인정받은 기업
4. 기타 업종 특성상 상시 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 중 본사, 협회, 지자체 등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이 인증하여 사회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사회맞춤형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적격여부로 판단한 산업체

③ 사회맞춤형학과 승인의 최소채용약정인원은 20명으로 하고 채용약정 인원의 1.5배 까지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 운영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충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사회맞춤형학과의 운영기간 및 취소)** ① 사회맞춤형학과의 설치·운영기간은 사회맞춤형학과 설치학년도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협약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채용협약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률 30% 미만인 사회맞춤형학과에 대하여 총장의 허락을 얻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회맞춤형학과 참여기업 변경)** ① 사회맞춤형학과 참여기업 변경을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장은 참여기업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, 『사회맞춤형교육 참여기업변경 신청서』(별지 서식 2)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가 고용계약의 변경사유, 참여기업의 고용계약유지가능성, 참여기업의 직무연관성,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판단하여 변경신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이 재가함으로 변경을 승인한다.

**제9조(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)** ①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은 본 대학 “역량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”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>

②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편 시기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.

③ 사회맞춤형교육은 학과단위 및 타 학과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회맞춤형교육의 운영)** ① 사회맞춤형교육은 설치한 학과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며,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 단,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과를 선정하고, 그 학과의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

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사회맞춤형교육 참여 학생을 제4조 제3항 제1호의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사회맞춤형교육을 시작하는 학기 개시일 이전에 선발하고, 학과장은 그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명시한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자를 선정하고, 학과장은 그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전문화되고 특화된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생선발, 교육과정개발, 교재개발, 교육과정 운영 등은 학과와 협약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.

**제11조(전담교수)** ① 학과는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학과의 전임교수 중 전담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전담교수는 학과장과 공동으로 학과의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, 평가체제 구축 등 사회맞춤형교육 운영을 주관한다.

**제12조(산업체멘토)** ① 학과는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협약업체별로 1명의 직원을 추천받아 산업체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산업체멘토는 학생의 학습지원, 경력개발지원, 프로젝트 수행지도 등 사회맞춤형교육 운영을 지원한다.

**제13조(학사관리)**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 및 성적 등의 학사 관리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과 관련한 활동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 1]

사회맞춤형교육 계획 승인 신청서							
참여학과				사회맞춤형학과명			
학과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일학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융합학과			산업체 수			
채용약정인원				선발인원			
<b>【협약기업】</b>							
산업체명	업종	매출액 (천원)	신용 등급	인증현황	상시 근로자수	약정 인원수	협약일시
사회맞춤형교육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                     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과 _____ 학과장 _____(인)                     </div>							
<b>동양미래대학교 총장 귀하</b>							
<b>※ 첨부서류</b> 1. 사회맞춤형 현장중심교육 운영계획(사회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회의록 포함) 1부 2.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(별지 서식 4) 1부 3.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산업체멘토 구성 현황 (별지 서식 5) 1부 4. 사회맞춤형학과 협약산업체(기관) 현황 (별지 서식 6) 각1부 5. 대학-산업체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서 (별지 서식 3) 각1부							

[별지 서식 2]

## 사회맞춤형교육 참여기업 변경 신청서

참여학과	사회맞춤형학과명
------	----------

**【변경전】**

학과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일학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융합학과	산업체 수	
채용약정인원		선발인원	

**【변경후】**

학과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일학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융합학과	산업체 수	
채용약정인원		선발인원	

**【협약기업】**

산업체명	업종	매출액 (천원)	신용 등급	인증현황	상시 근로자수	약정 인원수	협약일시	변경 (○)
								○

사회맞춤형교육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학과 \_\_\_\_\_ 학과장 \_\_\_\_\_ (인)

### 동양미래대학교 총장 귀하

**※ 첨부서류**

1. 참여기업변경사유서(사회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회의록 포함) 1부
2.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(별지 서식 4) 1부
3.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산업체멘토 구성 현황 (별지 서식 5) 1부
4. 사회맞춤형학과 협약산업체(기관) 현황 (별지 서식 6) 각1부
5. 대학-산업체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서 (별지 서식 3) 각1부



[별지 서식 4]

### 20\_\_학년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위원회

학과명		학과장	(인)
-----	--	-----	-----

구분	소속	직위	성명	관련 직무
위원장				
전담교수				
내부 위원				
		명		
외부 위원				
		명		
<b>총</b>	<b>명</b>			

※ 외부 위원인 경우 관련 직무명을 기재하시기 바람 (사회맞춤형 협약업체별 1인 이상 포함해야 함)

[별지 서식 5]

### 20\_\_학년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산업체멘토 구성 명단

학과명		학과장	(인)
-----	--	-----	-----

구분	소속	직위	성명	관련 직무
<b>총</b>	<b>명</b>			

※ 사회맞춤형 협약업체별 1인 이상 포함해야 함



[별지 서식 6]

## 사회맞춤형학과 협약산업체(기관) 현황

협약대학		유형	단일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컨소시엄 <input type="checkbox"/>
사회맞춤형 학과명		약정인원	
업체명		대표자	
사업자 등록번호		연락처	대표자 : 실무자 :
업 종		종사원수	명
주생산품		회사규모	<i>연 매출액 00억원</i>
주 소	(   -   )		
홈페이지		e-mail	
전화번호		FAX번호	
신용등급			
인증현황	중소기업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자원통상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월드클래스300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장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Best HRD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_____		

※ 첨부서류 : 인증 현황 증빙서류 (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